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변천

박 종 순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공증담당변호사

I. 서론

올해 대한공증인협회의 최대 화두(話頭)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개정 건의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2023년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금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사실상 2006년에 개정된 이후 17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차임 상승·임금 상승 등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회원들은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할 공증사무의 종류, 수수료 인상의 폭,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 이유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위와 같은 회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공증인이 국가 사무인 공증사무를 적정(適正)하고 공정(公正)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상향(上向) 조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의 인상과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가액의 인상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必須不可缺)의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증사무의 강도(強度)나 사무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는 그 사무에 맞게 수수료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협회는 2023년 8월 ‘공증실무협의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아래에서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제정된 이래 수회에 걸쳐 개정된 역사적 변천 과정 중 제2조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제13조의 ‘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그리고 제20조의 ‘인증의 수수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제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절실(切實)함을 피력(披瀝)하고자 한다.

Ⅱ.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공증인수수료규정’의 제정

우리나라 공증인법은 1961. 9. 23. 법률 제7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제정된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지위와 그 공증사무 처리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증인제도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공증인 수수료와 관련하여, 제정 공증인법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는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과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전항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의로도 그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일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제7조 제3항에 따라 1962. 1. 16. 법무부령 제31호로 ‘공증인수수료규정’이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제정된 ‘공증인수수료규정’은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같이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되었고, 규정의 순서와 내용도 현재 일부 추가된 것(제13조의2, 제19조의2, 제21조의2, 제23조의2)을 제외하면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거의 같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본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이 10만 환 이하일 때에는 천 환으로 하고 10만 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0만 환마다 3백 환을 가한다)를, 제13조는 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10만 환으로 본다. 단, 그 최저가액이 10만 환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를, 제20조는 인증 행위(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를 규정하였다.

2. 1963년 및 1965년의 일부 개정

가. 1963년

1963. 6. 22. 법무부령 제65호로 공증인수수료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1963. 7. 1.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환’을 ‘원’으로(예컨대 10만 ‘환’을 만 ‘원’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는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이 만 원 이하일 때에는 백 원으로 하고 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만 원마다 30원을 가한다.”로 개정되었다. 또 제13조(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만 원으로 본다. 단, 그 최저가액이 만 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즉 ‘10만 환’이 ‘만 원’으로 개정된 것이다.

나. 1965년

1965. 10. 11. 법무부령 제84호로 공증인수수료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 중 ‘100원’을 ‘200원’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즉 일부 개정을 통해 증서작성의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3. 1971년·1974년 및 1979년의 일부 개정

가. 1971년

1971. 2. 12. 법무부령 제172호로 공증인수수료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및 수수료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이 10만 원까지 그 수수료는 500원, 20만 원까지 600원, 50만 원까지 900원, 100만 원까지 1,200원, 10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1,000분의 1을 가산하되,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제13조(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중 ‘만 원’을 ‘20만 원’으로 한다.”

요컨대 일부 개정을 통해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같이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에 따라 단계적 방법으로 수수료를 규정하였다.

나. 1974년

1974. 8. 26. 법무부령 제188호로 공증인수수료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중 ‘500원’을 ‘750원’으로, ‘600원’을 ‘900원’으로, ‘900원’을 ‘1,350원’으로, ‘1,200원’을 ‘1,800원’으로, ‘1,000분의 1’을 ‘2,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 중 ‘20만 원’을 ‘50만100원’으로 한다.”

위 일부 개정을 통해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목적 금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다. 1979년

1979. 6. 15. 법무부령 제211호로 공증인수수료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1979. 7. 1. 시행되었다. 제명 ‘공증인수수료규정’을 ‘공증인수수료규칙’으로 개정하였다. 또 제2조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2조 중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금액’이 50만 원까지 그 수수료는 2,000원, 100만 원까지 3,000원, 200만 원까지 5,000원, 500만 원까지 12,000원, 50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제13조 중 ‘50만100원으로 본다’를 ‘100만100원으로 본다’로 하고, ‘50만100원을 초과하거나’를 ‘100만100원을 초과하거나’로 한다.”

1974년에 이어 위 일부 개정에서도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목적 금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4. 1985년 및 1986년의 일부 개정

가. 1985년

1985. 8. 1. 법무부령 제275호로 공증인수수료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증인수수료는 1979년 6월 15일 법무부령 제211호로 개정된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서 그동안 관계 법령의 개정과 물가 및 공공요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증인의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의 작성과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을 각각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까지 및 500만 원을 초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가액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까지 및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다(제2조. 100만 원까지 3천 원, 200만 원까지 5천500원, 500만 원까지 1만3천 원, 1천만 원까지 2만 원,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둘째,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100만100원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500만100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인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소송물 가액을 500만100원으로 본다는 규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제13조). 아울러 제1조 중 ‘이 영’을 ‘이 규칙은’으로 개정하였다(이하 ‘영’을 ‘규칙’으로 개정함).

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증인의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나. 1986년

1986. 12. 24. 법무부령 제292호로 공증인수수료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 이유는, 공증인법의 개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새로 인정된 규약작성 등의 수수료 액을 명시하고 공증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약작성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고(제13조의2),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인정된 부기 수수료와 우편송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제23조의2), 법률적 성질 및 난이도 등이 유사하나, 수수료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규정된 위임장 등의 작성 수수료와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였다(제15조 및 제19조). 또 외국어로 기재된 사서증서의 인 증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개정된 규정 중 제20조(인증행위)는, “①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 수수료의 2배를 가산한다.”로 개정되었다.

위 일부 개정을 통해 일부 인증행위에 대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또 인증에 있어 공증사무의 난이도가 개정이유 중 하나로 고려되었음을 적시하였다.

5. 1991년·1993년 및 1996년의 일부 개정

가. 1991년

1991. 10. 7. 법무부령 제356호로 공증인수수료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증인수수료규칙은 1986년 12월 24일에 최종 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증인이 촉탁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를 일부 인상 조정하였고(제2조. 200만 원까지 1만 원, 500만 원까지 2만 원, 1천만 원까지 3만 원, 1천500만 원까지 4만 원, 1천50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음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개정(1990. 12. 31, 법률 제4,299호)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산정 불능 시에는 그 가액을 1천만100원으로 보도록 하였다(제13조). 그리고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경우 기본수수료 1만 원에, 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2천500원을 가산하던 것을 기본수수료 1만5천 원에, 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3천 원을 가산하도록 인상 조정하였다(제15조). 또 위임장 등의 작성 수수료 5천 원을 5천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제19조).

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증서작성 수수료와 목적 가액 산정 불능 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또 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 등이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나. 1993년

1993. 2. 24. 법무부령 제366호로 공증인수수료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증인수수료규칙은 1991년 10월 7일에 최종 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증인이 촉탁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증유형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작성 수수료를 일부 인상 조정하였다(제2조. 200만 원까지 1만500원, 500만 원까지 2만1천 원, 1천만 원까지 3만1천500원, 1천500만 원까지 4만2천 원, 1천50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1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또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의 경우 기본수수료를 1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제15조), 위임장 등의 작성 수수료 5천500원을 6천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제19조). 다음으로, 상법상 법인의 정관인증 수수료 4만5천 원을 5만 원으로, 법인

의사록의 인증 수수료 1만2천 원을 1만5천 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다(제21조).

요컨대 이번 일부 개정으로 증서작성 수수료 등이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도 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 등이 일부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데에, 그래서 공증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 1996년

1996. 12. 31. 법무부령 제435호로 공증인수수료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는 1993년 2월에 정하여진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공증인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공증유형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공증인의 업무로 추가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였다(제2조. 200만 원까지 1만1천 원, 500만 원까지 2만2천 원, 1천만 원까지 3만3천 원, 1천500만 원까지 4만4천 원, 1천50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또 제20조(인증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①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 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 의하여 공증인 업무로 추가된 주식회사의 설립 경과와 변태 설립사항 등에 대한 조사·보고의 수수료를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였고(제19조의 2), 상법상 법인정관 인증의 경우 기본수수료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법인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1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다(제21조).

위 일부 개정을 통해 증서작성의 수수료 등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일부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명시하였다.

6. 2006년 및 2010년의 일부 개정

가. 2006년

2006. 12. 14. 법무부령 제604호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2월 31일 공증인 수수료 개정 이후 물가 인상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제2조). 다음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률행위 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 시 가액을 1천만 100원에서 2천만100원으로 변경하였다(제13조). 그리고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인증 수수료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제20조 제1항). 또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한액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상한액이 1993년 공증인법에는 50만 원, 1997년 공증인법에는 60만 원이었음),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아울러 제명 ‘공증인수수료규칙’을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개정하였다.

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수수료, 그리고 인증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또 물가 인상 등 인상요인의

누적이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공증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7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 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 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나. 2010년

2010. 2. 5. 법무부령 제693호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증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하였다(제20조 제1항). 다음으로, 법률에서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점에서 일반 사서증서 인증보다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일반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2항 신설).

그리고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 및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현행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종래 일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3배로 하던 것을 2배로 조정하여 수수료를 인하하였다(제20조 제3항). 위임장 인증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종래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감액하도록 하였다(제21조의2 신설).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20조 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컨대 위 일부 개정을 통해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위임장의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실질적으로 개정할 때는 2006년 공증인법을 일부 개정할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제정된 이후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제정된 이후 1965년 개정 시부터 2006년 개정 시까지 꾸준히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목적 가액의 산정 불능의 경우’ 1971년 개정 시부터 1991년 개정 시까지 그 가액이 꾸준히 인상되다가 2006년 개정 시 1천만100원에서 2천만1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러나 그 후 17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가액은 변경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정을 통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등 공증인 수수료를 인상한 이유로서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 공증의 난이도,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 등을 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증인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개정하였음을 개정이유에서 명시

하였다. 넷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거의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었다. 대략 4년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2010년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2010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010년에 개정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그 이전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 중 일부의 수수료를 인하(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위임장 인증 수수료)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2010년 이후 13년 동안의 물가 상승, 차임 상승, 임금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증인의 품위(品位)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러하다. 